

공정위, 민관합동위원회 건의 공정거래법 개정권고안 발표

- 철도·우편·금융·보험 등 독점적사업 전업체에 공정거래법 적용 -

공정거래법 개정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정부관계부처, 학계, 법조계 등 관련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운영하여 온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위원장 : 서헌제 중앙대 법대 학장)¹⁾는 지난 4월 30일 구성된 이후 총 6차례의 회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법률적 제재수단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둔 공정거래법 개정 권고안을 최종 확정하여 이를 지난 8월 13일(목) 공정위에 제출했다.

동 개정 권고안에 따르면 경제 각 부문의 공정거래법 적용확대를 위해 법적용대상 사업자가 업종의 구분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되고, 금융·보험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시장지배적남용행위를 규제하게 된다. 또한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효과가 명백한 경성카르텔에 대해서는 당연위법의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규제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무체재산권의 부당한 행사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동 민관합동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집행기능의 효율화 및 제재권한의 강화를 위하여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대신에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보호 규정을 보완하여 기업이 신뢰를 갖고 자료제출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쟁사업자나 소비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정위가 법원에 임시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소비자보호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 사전 지정·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따라 시장지배적 추정제도를 도입하여 사전별로 실질적인 시장지배력 행사여부를 판단토록 개선함으로써, 앞으로는 모든 기업이 가격조절이나 신규경쟁업체의 진입방해행위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및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당연위법시 하고 있는 재판대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경쟁제한효과를 감안하여 위법성을 판단토록 하였으며, 위원회 심결의 독립성 및 공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심리와 의결은 공개하되 합의과정은 비공개하고, 불복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러나 부당내부거래행위의 효과적 적발과 기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 확인 등을 위해 자금추적권을 도입하는 문제와 거래상대방이나 경쟁사업자를 위해할 목적의 악의적인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위신고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 및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의 독립성을 선언적으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규정하는 문제 등은 위원들간에 의견이 대립되어 건의를 유보했다.

공정위는 동 권고안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내에 정기국회에 상정·의결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1) 동 민관합동위원회의 설치배경, 구성 및 동 위원회 위원명단은 공정경쟁지 제32호(1998.4.30), p.28. 참조

공정거래법 개정 권고안의 주요 내용

I. 법적용영역 확대

- ▷ 법적용대상 사업자를 12개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업종열거방식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적용대상 획정방식에 따라 업종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으로 전환(법 제2조 제1호)
- ▷ 소규모사업자가 설립한 일정조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적용을 배제하던 것을 농업·어업·임업의 1차산업 생산자조합에 한하여 법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축소(법 제60조제1항)
- ▷ 외국인에 대한 법 적용문제는 명시적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법 해석을 통해 적용하는 것으로 함
- ▷ 시장지배적사업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금융·보험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규제대상에 포함(법 제2조제7호)
- ▷ 가격담합, 시장분할 등 경쟁제한효과가 명백한 경성카르텔에 대해서는 법개정을 통해서 당연위법의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규제(법 제19조)
 - *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용제외 카르텔 중 가격담합, 시장분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성카르텔에 대해서는 「카르텔일괄정리법」을 제정하여 정비할 것을 권고
- ▷ 기존의 경쟁제한적 법령 등을 사전에 억제하는 외에 기존의 경쟁제한적 법령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내용을 담고 있는 모든 법령, 예규·고시, 승인·처분 등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법 제63조)
- ▷ 현재 공정거래법이 전면 배제되고 있는 저작권법 등에 의한 무체재산권의 행사를 "정당한 행사"에 한해서만 법적용을 제외하고, 무체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해당하는 유형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법에서 위임(법 제59조)

II. 집행기능의 효율화 및 제재권한의 강화

- ▷ 법위반행위 조사에 필수적인 현장출입권한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법 제50조)

- ▷ 영업비밀 보호규정을 보완하여 기업이 신뢰를 갖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위원회 조사업무의 원활화를 도모(법 제62조)
 - * 영업비밀의 비공개원칙 규정, 영업비밀 공개에 대한 공정위의 1차 판단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 영업비밀 누설시 벌금 상향조정 등
-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과징금제도 대신에 이행강제금제도로 전환하고, 이행강제금 환급절차, 가처분 허용 등도 마련(법 제17조의2)
 -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후에도 당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일별 이행강제금을 부과
- ▷ 기업결합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대신에 행정벌인 과태료제도를 도입하여 기업결합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 ▷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정위가 법원에 임시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 * 법원은 공정위의 신청이 이유 있을 경우 당해행위, 의결권의 행사 또는 임원의 업무집행 등의 일시 중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III. 소비자보호기능 강화

- ▷ 현행처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데 미흡하므로, 부당한 표시·광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표시·광고법을 제정하고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연계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고

IV. 심결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

- ▷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있어 공정한 결론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리와 의결은 공개되되, 사건에 관한 합의 과정의 비공개원칙을 규정
- ▷ 행정소송법의 개정취지와 부합되도록 법 제54조를 개

정하여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임의적 절차로 전환하여 불복당사가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

V. 시장효율성 제고방안

-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사전 지정·고시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시장지배력 추정제도를 도입하여 사건별로 실질적인 시장지배력 행사여부를 판단토록 개선하고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해 시장구조를 조사·공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법 제2조, 제3조, 제4조)
- ▷ 현재 당연위법시하고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경쟁제한효과를 감안하여 위법성을 판단토록 변경하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의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타 법령에 이를 명시하거나 경과규정을 두는 방안을 강구(법 제29조)
- ▷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적절히 규제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제도를 현재 한정적 열거방식에서 예시적 열거방식으로 전환(법 제23조)

VI. 기업결합심사제도의 개선

-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의 경우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외에 주식취득도 사전 신고제로 전환
- ▷ 20% 이상의 주식취득이라도 최대출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간이심사로 처리되는 점을 이용하여 신고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주식취득으로 최대출자자가 될 경우에는 재신고의무를 부과
- ▷ 종래 기업결합 사전심사 요청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대규모회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 기업결합 예외인정의 판단기준인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요건을 개선하여 효율성 증대로 인한 국민경제적 이익이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부실기업인 경우로 명확화
- ▷ 직접금지방식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가 명백히 곤란한 경우에는 영업제한 등 시장행태를 제한하는 방식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건의안
<p>제2조(정의) 1.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p> <p>가. ~파. (생략)</p> <p>2. ~6. (생략)</p> <p>7.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p>	<p>제2조(정의)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p> <p><삭제></p> <p>2. ~6. (생략)</p> <p>7.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경쟁사업자가 없거나 경쟁사업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한다.</p>

현 행	건 의 안
<p>가. ~나. (생략)</p> <p>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① ~ ② (생략) ③ ~ ⑤ <신설></p> <p>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17조(과징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을 한 자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1.~3. (생략) ② ~ ③ <신설></p>	<p>가. ~나. <삭제></p> <p>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① ~ ② (생략) ③ <u>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공표한다.</u> ④ <u>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항에 의한 시장구조의 조사·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 ⑤ <u>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p> <p>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p> <p>제17조의2(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16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 1일당 다음 각호의 금액에 10,0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을 한 자에 대하여는 매 1일당 2백만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1.~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동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동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동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없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p>

현 행	건의 안
<p>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u>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u></p> <p>1.~8. (생략)</p> <p>② ~ ③ (신설)</p> <p>② ~ ⑤ (이하 생략)</p> <p>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생략)</p> <p>1. (생략)</p> <p>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p> <p>3.~7. (생략)</p> <p>(신설)</p> <p>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는 <u>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u></p> <p>② ~ ④ (생략)</p> <p>제30조(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신고)</p> <p>① ~ ② (생략)</p> <p>제43조(심의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의 <u>심의는 공</u></p>	<p>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u>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u></p> <p>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u>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u></p> <p>1.~8. (삭제)</p> <p>② <u>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합의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p> <p>2.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p> <p>3.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p> <p>4. 입찰과정을 조작하는 행위</p> <p>③ <u>부당공동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u></p> <p>④ ~ ⑦ 항변 변경(이하 생략)</p> <p>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생략)</p> <p>1. (생략)</p> <p>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p> <p>3.~7. (생략)</p> <p>8. 1호 내지 7호 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p> <p>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u>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u></p> <p>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u>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u></p> <p>(삭제)</p> <p>(삭제)</p> <p>제43조(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p>

현행	건의안
<p>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신설></p> <p>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p> <p>제54조(소의 제기) ①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u>이의신청</u>에 대한 재결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p> <p>제59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신설></p> <p>제60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조합의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①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② ~ ④ (생략)</p> <p>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u>비밀</u>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p>	<p>① 공정거래위원회의 <u>심리와 의결</u>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u>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u>는 공개하지 아니한다.</p> <p>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u>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u>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p> <p>제54조(소의 제기) ①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u>처분 또는 이의신청</u>에 대한 재결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p> <p>제59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①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u>정당한 행사</u>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무체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해당하여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0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 임업, 어업의 생산자 조직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의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① <u>소규모의 사업자의 상부상조</u>를 목적으로 할 것 ② ~ ④ (생략)</p> <p>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u>비밀(영업비밀을 포함한다)</u>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p>

현행	건의안
<p>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④ <신설></p>	<p>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5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출자의 동의 또는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자에게 최소한 10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제출자는 서울행정법원에 그 공개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가처분 기각결정이 날 때까지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제정의 협의 등) ① ~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 당해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예규·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의 통보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고시 등이나 통보없이 행하여진 승인 기타의 처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p>	<p>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제정의 협의 등) ① ~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 예규·고시, 승인 기타의 처분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 당해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예규·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경쟁제한행위의 시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의 통보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고시 등이나 통보없이 행하여진 승인 기타의 처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p>
<p><신설></p>	<p>제65조의2(법원의 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고 이를 시정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 의결권의 행사 또는 임원의 업무집행 등의 일시중지를 명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행위, 의결권의 행사 또는 임원의 업무집행</p>

현 행	건 의 안
<p>제6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2.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p> <p>제69조(벌칙) 제62조(비밀업수의 의무)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69조의2(과태료) ① (생략)</p> <p>1. (생략) 〈신설〉</p> <p>2~5. (생략) 〈신설〉</p>	<p>등을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③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청이 있거나 일시 중지의 필요성이 소멸 또는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하되 동법 제15조(검사의 의견진술, 참여)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p> <p>⑥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있다. 이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p> <p>⑦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3조(민사소송법 적용의 배제), 제4조(심리의 불속행)제2항·제3항, 제5조(판결의 특례)제1항·제3항 및 제6조(특례의 제한)의 규정은 제6항의 항고사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⑧ 임시중지명령의 신청·심리·재판·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제6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2. <삭제></p> <p>제69조(벌칙) 제62조(비밀업수의 의무)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69조의2(과태료) ① (생략)</p> <p>1. (생략)</p> <p>2.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동조제 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p> <p>3~6. 호변 변경 (생략)</p> <p>7. 제65조의2(법원의 임시중지명령)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원의 임시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p>

◆ 민관합동위원회 건의안 주요내용 비교 ◆

구 분	현 행	건의안
▶ 법적용대상 사업자	· 법적용대상 사업자를 12개 산업(한국 표준산업 대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열거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적용대상 확정 방식에 따라 현행 업종열거방식에서 업종구분없이 포괄적으로 정의
▶ 금융·보험사업자의 시장 지배적지위남용금지 조항 적용	· 금융·보험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 조항의 적용을 배제	· 금융·보험사업자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규제대상에 포함
▶ 시장지배적사업자 사전 지정제도 개선	· 독과점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의 규제를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독과점사업자를 지정·고시	· 사전지정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시장지배력의 추정요건을 명문화하여 사건별로 시장지배력 행사여부(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를 판단토록 개선 · 독과점적 시장구조개선을 위해 시장구조에 대해 조사·공표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위원회 합의 비공개원칙 근거 규정	· 심의의 공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합의의 비공개원칙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음	· 법원조직법의 유사조항을 원용하여 심리와 의결은 공개하되, 사건에 관한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
▶ 현장출입권한 명시	· 범위만행위의 조사 등을 위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	·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로 개정
▶ 이의신청제도 개선	·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도록 함	·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무체재산권 행사 제한	·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	·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무체재산권의 행사는 위법하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 · 무체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법적용이 제외되는 조합의 범위 조정	· 소규모사업자나 소비자들이 설립한 일정한 조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법적용을 제외	· 법적용제외 대상조합을 농업·임업·어업의 생산자조합으로 국한
▶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도입	· 근거규정 없음	· 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가 법원에 임시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도입	·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가 가능	· 신고규정위반에 대한 벌금제도를 폐지하고 과태료제도(1억원 이하)를 도입
▶ 기업결합에 대한 과징금을 이행강제금으로 전환	·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대하여 시정조치 외에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의 경우 기업결합금액의 10% 이내에서,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5억원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효과적인 시정조치의 이행확보를 위해 과징금 대신 이행강제금(매 1일당 기업결합금액에 10,000분의 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으로 전환